

의안번호	2214806
의 퇴 인	최보운의원
회 답 일	2026.3.11.
추계번호	25D6622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(고지사항)	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수용자에게 고지를 할 때에는 점자, 수어, 쉬운 언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22조(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)	장애인수용자에게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37조(외부의료시설 진료 등)	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장애로 인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진료받도록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37조의2(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)	장애인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로 이송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(고지사항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(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)	
3	안 제37조(외부의료시설 진료 등)	
4	안 제37조의2(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)	

2. 상세 사유

-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점자, 수어 등의 도입(안 제17조)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급(안 제22조)
 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점자문서 작성시스템, 수어 전문가 채용 및 장애인보조기기의 지급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 - 다만, 장애의 유형별로 고지 시 필요한 조치 및 장애인보조기기의 종류가 상이하고, 장애인수용자의 수와 그에 따른 수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
-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(안 제37조) 및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로의 이송(안 제37조의2)
 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수용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 - 다만, 장애인수용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고,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의 지정, 운영기준 및 이송기준 등을 안 제37조의2제2항¹⁾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

1)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: 2214806) 제37조의2

② 집중의료처우 교정시설의 지정, 운영기준 및 이송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